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527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

[redacted]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구청장

[redacted]

변 론 종 결 2018. 12. 6.

판 결 선 고 2019. 1.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6. 15. 원고에게 한 별지 표 기재 각 취득세(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5. 28.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이하 '대도시'라 한다) 내인 [redacted]구 B에 자분탐상기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4. 7. 9. 대도시 내에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상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에 해당하는 [redacted]구 C 공장용지 60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5.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12. 17.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일반철골구조(철근)콘크리트지붕 5층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5. 1. 8. 원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2. 30. 본점 소재지를 [redacted]구 B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위치한 [redacted]구 C로 이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하였다.

마. 피고는 2015. 9. 11. 원고가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7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50,907,310원, 지방교육세 5,090,730원, 농어촌특별세 2,545,360원을, 이 사건 건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32,357,590원, 지방교육세 1,848,990원, 농어촌특별세 2,311,25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선행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피고는 2017. 3.경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3층 및 4층 부분과 그 부속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2015. 12. 1. 및 2016. 1. 15.부터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 6. 15. 원고에게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앞서 선행처분에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부과 · 고지한 세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액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추가로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위법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은 아래와 같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부동산'에는 같은 항 본문 제2호가 별도로 대도시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장 및 그 부속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공장 및 그 부속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부동산에 공장 및 그 부속 토지가 포함된다고 본다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은 공장과 그 부속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내의 공장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과 그 부속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2항 본문 제2호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내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한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을 적용받는 공업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공장과 그 부속 토지인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2항 본문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피고가 2015. 9. 11. 선행처분을 하면서 과세 근거규정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항만을 적시하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적시하지 않음에 따라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및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3) 선행처분 하자의 승계

피고는 2015. 9. 11. 선행처분을 하면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적시하지 않는 등 납세 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와 같은 선행처분의 하자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는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에 따라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 · 비업무용 또는 사업용 ·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 · 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 지점 · 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 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본점 · 주사무소 ·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 · 설치 · 전입 이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요건만 갖추면 그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일단 위 각 규정에 정한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일률적으로 위 각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두135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나목은 제1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 ·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분에 대하여 제13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법인 설립 이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도시형 공장을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 위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여 다른 업종이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는 그 용도를 불문하고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따라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가 적용된다(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2호는 제1호와 별도로 대도시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정한 것일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부동산'에 공장 및 그 부속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2호의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관한 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부동산'에 공장 및 그 부속 토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이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2항 본문 제2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이 아니다).

2)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여부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비과세 관행 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중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예외적인 법 원칙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표명 등을 통하여 부여한 신뢰가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두594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선행처분을 하면서 취득세율 적용의 근거규정으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만을 적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선행처분의 하자 승계 여부

피고는 원고가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면제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 선행처분을 하면서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과세표준액, 세율(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7호), 세액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지방세법에 따른 납세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가 선행처분을 하면서 취득세 중과세율 배제규정인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를 적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설령 선행처분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본다 하더라도, 선행처분과 이 사건 각 처분은 과세의 법적 근거가 다른 것으로 각각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된 처분일 뿐이므로(선행처분이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선행처분의 하자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성완

판사 장원정

판사 정유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세목	과세물건			세액(원)
	구분		면적(㎡)	
취득세	3층	건물분	424.60	5,496,990
		토지분	169.21	14,398,150
	4층	건물분	424.60	5,563,200
		토지분	169.21.	14,571,560
지방교육세	3층	건물분	424.60	1,099,390
		토지분	169.21	2,879,620
	4층	건물분	424.60	1,112,630
		토지분	169.21.	2,914,30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1.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기한 또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이 금지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겸용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공장은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 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② 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공장의 중과세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과세물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 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 하는 경우. 다만, 타인 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2-28

다. 기존 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 공장을 철거한 후 1년 이내에 같은 규모로 재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 등으로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은 편입되기 전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상 경과한 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 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후 30일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공장의 증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으로 쓰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해당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 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은 기존 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 이상을 증가하는 경우